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00

제출일자 : 2026. 3.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 삭제)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1. 30. ~ 2026. 2. 19.)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1. ~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